

제206회 임시회

2002. 11. 7.

검 토 보 고 서



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

충청북도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

검 토 보 고

1. 제출자 : 충청북도지사

2. 제출일자 및 회부일자

○ 제출일자 : 2002년 10월 30일

○ 회부일자 : 2002년 10월 31일

3. 제안이유

물품관리에 있어 불용품의 처분제도를 정보화시대에 맞게 개선하여 행정절차를 간소화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.

4. 주요골자

불용품의 소요조회 시 관보나 공문을 통하여 실시하던 것을 조달청 및 도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도록 함.

5. 검토의견

○ 충청북도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검토한 바

효율적인 물품관리를 위하여 행정자치부 표준안에 따라
 불용품에 대한 소요조회 방법을 정보화 시대에 맞게,
 인터넷을 통하여 조달청 및 충청북도 인터넷 홈페이지에
 게시하는 것으로 소요조회를 갈음하게 할 수 있도록 절차를
 간소화하려는 것으로서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되나,

동 조례안 제16조 제1항의 「~ 활용가능품에 대하여는 국가 및
 지방 자치단체에 소요조회를 하여야 한다」고 규정하고 있으나

동조 제3항에는 「~ 단위당 물품취득가격이 단가 2천만원
 이상인 경우 조달청 및 도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
 소요조회를 할 수 있다」고 규정하고 있어,

2천만원 이하인 경우도 소요조회를 하여야 할 것인지 혼돈이
 예상되는 데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.

붙임 : 충청북도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